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
----------	-----

제출년월일 : 2023. 5.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신설
- 나.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
- 다. 기금별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례의 미비점 등 반영

2. 주요내용

- 가. 고향사랑기금 관련 조문 제30조 신설
- 나. [별표]기금별 존속기한 중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 9. 26.로 5년 연장
- 다. 상위법 개정조항 반영 및 맞춤법 등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 1) 자치행정과 : 고향사랑기금 신설에 관한 사항
- 2) 환 경 과 : 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라. 기타

- 1) 입법예고 : 2023. 4. 13. ~ 2023. 5. 3. (20일간)
-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4) 인권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사항 미반영
-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별도 개선사항 없음
- 7)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인권영향평가	[별표]기금별 존속기한 1. '기후변화기금'을 '기후위기기금'으로 바꾸어 표기 바람	미반영	[미반영사유] 1. 상위법 등에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는 용어의 정의가 다르며, 기금의 명칭은 기금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장기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하고, 제2항제8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고향사랑기금)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일부를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기금 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5. 12. 31 (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임의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3	체육진흥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4	재난관리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법정
5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2026. 12. 31 (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임의
6	노인복지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7	양성평등기금	2026. 12. 31 (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임의
8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	법정
9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0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2	도로굴착복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3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물법」 제6조 의2	법정
14	기후변화기금	2028.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5	사회투자기금	2025.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6	아동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7	장애인체육기금	2027.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8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체육진흥기금) ① (생략)</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2. (생략)</p> <p>3. 그 <u>밖에</u> 잡수입 등</p> <p>③ (생략)</p>	<p>제14조(체육진흥기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밖의-----</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 안정기금)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지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및 특기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7. (생략)</p> <p>8. 그 <u>밖에</u> 잡수입 등</p> <p>③ ~ ④ (생략)</p>	<p>제16조(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 안정기금) ① ----- ----- 제18조의7----- ----- ----- ----- ----- ----- ----- -----.</p> <p>②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밖의-----</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신설>	<p>제30조(고향사랑기금)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p>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현행	개정안
<p>제4장 보칙 <신설> 제30조 ~ 제32조 (생략)</p>	<p>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일부를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삭제> 제4장 보칙 제31조 ~ 제33조 (현행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와 같음)</p>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기금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9	(생략)			
10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1~12	(생략)			
13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법정
14	기후변화기금	2023.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5~17	(생략)			
18	<신설>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기금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9	(현행과 같음)			
10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1~12	(현행과 같음)			
13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	법정
14	기후변화기금	2028.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5~17	(현행과 같음)			
18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생략.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 종 호